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 유 재 산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8, 양식업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법되면서 수산업법상의 어업의 범위에 양식업이 제외되어 국유재산법상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농업(경작·목축용)과 달리 부속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이 불비한 문제가 있어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감면대상에 명시하고 어업용 부속시설의 범위를 경작·목축용에 준하는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추가 및 어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1의2호)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감면대상에 명시하고, 기존에는 일반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이 적용되던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양식업용 등의 부속시설의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 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 및 그 부속시설과 동일한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의 범위 (안 별표 4 신설)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 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 및 그 부속시설과 유사 또는 대칭되는 시설을 선별하여 본문 제29조제1항제1의2호 관련 별표 4에 사용료 1% 적용 대상이 되는 어업·양식업용 부속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2. 11. 9.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의2호 중 “내수면 어업” 후단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하고 “직접 사용”과 “하는 경우” 사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별표 4에 규정된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덧붙인다.

“별표 4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의 범위(제29조제1항제1호의2 관련)

1. 어구 등 보관시설
2.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3. 어업인이 생산한 생산물의 건조, 간이 보관 및 박신을 위한 시설
4. 해수 취·배수 및 여과시설 등 양식을 위한 시설
5. 어업인이 생산한 생산물과 자재 등을 선박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하역시설(보관시설은 제외)
6.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간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사용료가 부과되었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생 략)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u>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u>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양식산업발법」에 따른 양식업에 <u>직접 사용(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별표4에 규정된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별표 4]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의 범위(제29조제1항제1호의2 관련)

현 행	개 정 안
(신설)	1. 어구 등 보관시설 2.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3. 어업인이 생산한 생산물의 건조, 간이 보관 및 박신을 위한 시설 4. 해수 취·배수 및 여과시설 등 양식을 위한 시설 5. 어업인이 생산한 생산물과 자재 등을 선박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하역 시설(보관시설은 제외) 6.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165